

## 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 
공고합니다.

2024년 07월 26일

신당제5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 *장	김 *장 1953-03-05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0길 (신당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7-26